



이 서식을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귀하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귀하의 로컬 프린터에서 인쇄하거나 또는 이 서식 자체를 인쇄하여 손으로 쓰거나 타자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입력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고소장, 신청 및 다른 서류들은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Complaints, motions and other papers submitted to the court should be in English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뉴저지 주 고등법원-법률부-민사과에 제출하는 방법

누가 이 서식을 이용하는가?

만약 뉴저지 주 고등법원 법률부에서 귀하가 고소 당했음을 통보하는 소환장, 소장, 민사사건 내용진술서 (CIS) 및 트랙배정 통지서 (TAN)를 받았다면 귀하는 이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자동으로 승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5 일 이내에 CIS 와 함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답변서에는 소장에 제기된 주장에 대한 변호 및 소장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반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35 일 이내에 답변서와 CIS 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에 대한 의무 불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지급 판결의 전체금액이나 일부금액의 지불을 위해 카운티 보안관이 귀하의 돈, 임금 또는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 사항: 만약 귀하가 원고에 대한 반대주장이 있다고 생각되어 맞고소 하기를 원하면, 답변서 및 CIS 와 함께 맞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다른 피고에 대하여 반대주장이 있다고 생각되면, 답변서 및 CIS 와 함께 교차소송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맞고소 또는 교차의 소를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은 민사과 서기사무실의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유의 사항: 이 안내서는 변호사 없이 자기변호를 하는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뉴저지 법원 행정국이 마련한 자료입니다. 본 안내문의 지침, 설명서 및 관련 서식은 현행 뉴저지 주 법령과 법원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새로 바뀐 정보로 갱신됩니다. 가장 최신판 **서식**은 카운티 법원이나 법원 인터넷 사이트 njcourts.com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내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작성된 서식은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카운티에 제출하십시오. [고등법원 사무실](#) 명단은 법원의 고객 카운터나 njcourts.com 에(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서 본인변호를 하기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법원체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과,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증거들, 그리고 법률부 민사과 소송담당 부서에 제시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상의 규정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고액의 청구 또는 거액판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무부 민사과에 출두하는 대부분의 소송당사자들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귀하가 고소를 당한 경우, 귀하의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필시 귀하의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 형편이 안되면, 귀하의 관할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프로그램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들의 전화번호는 옐로우페이지 전화번호부 의 “Legal Aid” (법률 지원) 또는 “Legal Services” (법률 서비스)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받는데 부적하고 변호사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변호사협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전화번호도 귀하의 거주지역 옐로우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운티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소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운티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사건을 취급할 용의가 있고 때로는 절감된 변호사비용으로 자문해 줄 귀하의 지역 내 변호사 명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 전역에 소수민족 변호사들의 단체가 있으며, 특수한 유형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단체들도 있습니다. 귀하의 카운티법원의 직원에게 이런 단체들이 포함된 변호사소개 서비스기관의 명단을 요청하십시오.

만약에 귀하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 한다면, 이 안내서는 귀하가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청구 또는 변론에 관련되는 법에 대한 정보; 재판전 자료 공개를 이행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귀하의 사건과 관련해서 귀하가 참여하거나 또는 의무적으로 참여 해야만 하는 중재나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의 절차에 관한 정보; 재판 중 귀하의 주장 또는 변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종류들에 관한 정보; 또는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그 외의 절차 및 증거들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정보.

자기 변호를 할 때 예상해야 할 사항들

법정에서 귀하가 자신을 변호할 권리는 있지만, 귀하가 법원에서 특별한 대우, 도움 또는 배려를 받을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법원 직원이 귀하에게 해 줄 수 있는 일과 해 줄 수 없는 일들의 목록입니다. 법원직원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이 내용을 잘 읽어 보십시오.

- 법원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귀하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 들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건서류에 있는 내용중 일부를 귀하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일부 법원 서류양식의 견본을 제공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서류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법원 마감일에 관련된 대부분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법적자문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귀하의 변호사만이 귀하에게 법적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귀하의 사건을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말해 줄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의견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 변호사를 추천해 줄 수는 없지만 지역변호사 소개서비스 기관의 전화 번호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귀하 대신 판사에게 물어 볼 수 없습니다.
- 귀하가 법정 밖에서 판사와 대화하도록 해 드릴 수 없습니다.
- 판사가 내린 명령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서류의 사본들을 보관하십시오.

귀하의 소송과 관련해서 작성한 모든 서식과 서류들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십시오.

개요

민사소송은 소장과 민사사건 내용진술서(CIS)를 적정 수수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원고는 소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트랙 배정 통지서 (Track Assignment Notice: TAN)를 받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자료 공개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4개의 트랙 중 하나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고소장, CIS 및 TAN이 소환장과 함께 모든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해당 소송 수수료와 함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제출된 후, 자료공개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료공개 기간은 사건이 어떤 트랙에 배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료공개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사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어느 당사자라도 법원에 특정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사건은 조정 (중립적 제3자가 쌍방간의 입장 차이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촉진시키는 회의) 및/또는 중재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는 심의로서 제 3자가 사건의 해결 방안을 추천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수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 및/또는 중재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재판일정이 정해집니다. 재판은 한명의 판사 앞, 또는 판사 한명과 배심원단 앞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쌍방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판사 및/또는 배심원단의 결정은 최종 판결문에 포함됩니다. 만약 한 쪽 당사자가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를 원하면,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45일 이내에 상고부에 항소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

방어방법 (Affirmative Defense) - 방어방법이란 피고가 자신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지면 안되는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 방어방법의 예로는 사기, 원고측 과실부분, 시효소멸 등이 포함됨.

답변서 (Answer) - 답변서는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로서 원고가 제기한 각 주장에 대한 답변과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피고가 책임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대한 이유나 정황을 담고 있는 서류.

표제 (Caption) - 표제는 사건의 제목;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름들을 열거함. 예를 들면, 원고, John Jones 대 피고, Mary Smith.

소인 (Cause of Action) - 소인은 소송이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들을 말함.

인증 (Certification) - 인증은 진술자가 어떤 사실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한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확인하는 진술. 인증은 선서진술서와 유사하지만, 공증인이나 공인된 사람 앞에서 선서하지는 않음.

다른소송 없음의 확인 (Certification of No Other Actions) - 다른소송 없음의 확인은 답변서 말미에 쓰는 서면 선서진술로서 귀하가 알고 있는한 귀하가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이 소송이 다른 법원에서 소송중이거나 중재중이 아니며, 이 소송에 추가할 다른 당사자는 없고, 만약 변경사항이 있으면 법원과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할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는 것을 귀하가 확인하는 서면선서 진술서임.

민사사건 내용진술서 (CIS) - CIS는 귀하의 사건을 판사에게 요약하는 서식임. 법원규정에 따라 각 소송당사자는 CIS 를 제출해야 함. 이 안내서와 함께 사용되는 자기번호용CIS는 법원의 [Represent Yourself in Court \(Pro Se\) Self-Help Resource Center \(자기보호 지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음.

공동피고 (Co-defendant) - 공동피고는 소장의 원고에게 고소를 당한 또 다른 피고임.

소장 (Complaint) - 소장은 원고가 판사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어떤 구제를 추구하는지를 진술하는 문서임.

맞고소 (Counterclaim) - 맞고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임.

교차소송 (Cross-claim) - 교차소송은 한 피고가 다른 공동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임.

피고 (Defendant) - 피고는 고소를 당한 사람.

자료공개 (Discovery) - 자료공개는 한쪽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재판 시 제시하고 근거로 삼을 증거물에 관하여 알아 보는 재판 전 절차.

본 안내서에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

사건 번호 (Docket Number) - *사건 번호*는 귀하의 사건을 쉽게 확인하고 찾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배정해주는 번호임. 일단 귀하가 이 번호를 받으면, 귀하와 법원 간의 모든 의사소통에 이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함.

접수하다 (File) - *접수하다*라는 말은 법원이 귀하 사건의 처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정서식과 수수료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뜻.

배심원단 (Jury) - 민사사건에서 *배심원단*은 대개 법에 따라 선택된 6인으로 구성되며 재판시 논쟁중인 문제의 진위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림.

신청 (Motion) - *신청*이란 법원이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명령이나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임.

당사자 (Party) - *당사자*란 사건에서 피고 또는 원고를 뜻함. 법원에 보내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소송 당사자들 모두에게 보내야 함.

원고 (Plaintiff) - *원고*는 소송에서 소장을 먼저 제출한 사람.

우편송달 증명 (Proof of Mailing) - *우편송달 증명*은 귀하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보낸 날짜와 송달방식을 제시하는 서식.

프로 세 (Pro Se) - *프로 세*란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용어임. 소송에서 변호사가 없는 원고 또는 피고는 *프로 세* (자기 자신 대변)로 출두한다고 말함.

송달 (Service) - *송달*이란 소장이나 소송에 관련된 다른 모든 문서를 피고 및 그 외의 당사자들에게 배달하는 것을 말함. 법적 공식송달은 공인된 사람이 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함.

팀 (Team) - *팀*은 법원 직원들로 구성되며, 귀하의 사건추이를 담당함. 각 팀은 팀장의 감독하에 있으며 팀장은 민사과 매니저의 감독하에 있음.

트랙 (Track) - 민사과에 제소된 소송들은 4개의 *트랙*들 중 하나에 배정됨. 사건의 트랙배정은 대개 사건의 유형과 자료공개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됨. CIS 뒷면에 트랙 및 각 트랙에 포함되는 여러가지 사건 유형들의 목록이 나와 있음.

TAN - 트랙배정 통지서 (Track Assignment Notice - TAN) - *트랙배정 통지서 (TAN)*는 법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귀하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판사의 성명과 팀을 알려 줌. 이 통지서는 귀하의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전화번호도 제공함. 원고는 모든 피소인들에게 이TAN의 사본을 보내야 함.

재판개최지 (Venue) - *재판개최지*란 귀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함.

숫자로 표시된 아래의 각 단계는 귀하가 작성해야 할 서식들과 그 작성법을 설명해 줍니다. 각 서식은 8½” x 11” 규격의 백지만을 사용하고 타자하거나 인쇄체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규격 또는 색깔이 있는 종이에 작성된 서식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단계

1 단계: **답변서(서식 A)를 작성할 것**

답변서는 소장에서 원고가 진술한 사항들을 귀하가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의 여부를 간단 명료하게 법원에 알리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귀하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주장들을 제시하는 것임.

귀하는 소장에 번호로 표시된 각 항에 대해 그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또는 그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해야 함.

방어방법안에는 귀하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부재를 변호하는 사실들을 열거할 수 있음. 귀하가 제시할 모든 변호를 세분해서 다 열거하고 왜 원고가 요청한 구제를 수용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음. 예를 들면:

- 원고의 과실이다. (이유를 설명).
- 피고인 귀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 (설명).
- 서식 A에 이어진 지면에 기재한 추가 진술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할 것. 귀하의 사건을 배심원이 심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배심원 재판 요구란에 서명하지 말 것.

2 단계: **민사 사건 내용진술서 (CIS)를 작성할 것**

지시사항이 포함된 민사 [CIS](#) 서식은 [Represent Yourself in Court \(Pro Se\) Self-Help Resource Center](#)에서 찾을 수 있음. 작성이 완료된 CIS는 답변서와 함께 제출할 것. 필수인 이 CIS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답변서가 반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3 단계: **뉴저지 주 회계담당자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앞으로 수표나 머니 오더를 보낼 것.**

답변서 제출 수수료는 \$175 임. 수표를 뉴저지 주, 회계담당자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앞으로 보낼 것.

4 단계: **작성된 서식을 검토하고 사본을 만들 것.**

귀하가 작성한 서식이 온전한지 또한 적절한 곳에 서명을 했는지 확인할 것. 작성된 서식의 사본을 최소 6부를 만들 것.

만약 **답변서(서식 A)** 또는 귀하가 답변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의 사본에 소셜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차량번호판 번호, 보험증서 번호, 현재 사용중인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령, 법규, 행정적 지시나 또는 관사의 명령으로 이런 개인 신원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는 볼 수 없게 처리 해야함(검정으로). 현재 사용중인 은행계좌가 귀하의 소송의 주제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계좌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확인을 위하여 계좌번호의 마지막 4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음.

유의 사항: 귀하가 보관중인 원본에 (경찰의 사고 보고서와 같은 것) 나와 있는 앞에 열거된 개인정보는 법원에 제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지우지 말 것 (검정으로).

점검 목록 - 5 단계와 6 단계에서 귀하가 서류를 법원 및 다른 당사자들에게 우송하라는 연락을 받을 것임. 아래 점검 목록을 참고하면 귀하의 서류꾸러미에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답변서와 CIS의 원본과 사본 각 2부씩**
- **접수비 \$175. 이 금액은 뉴저지 주 회계담당자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를 수취인으로하는 머니오더나 수표여야 함.**
- **우표가 첨부된 반송용 봉투**
- **각 당사자에게 송달할 CIS 및 답변서 1 부;**
- **또는,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에게 송달될 CIS와 답변서 사본 각 1 부.**

**5 단계: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배달하거나 우송할 수도 있음.**

귀하가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들을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음. 법원주소는 사법부 웹사이트 www.njcourts.com(영어판)을 참조할 것.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배달증명 영수증을 요구할 것을 권장함.

답변서원본 및 CIS 원본, 그리고 사본 2 부씩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법원에 보낼 것.

**6 단계: CIS와 답변서를 모든 당사자들에게
우송할 것**

소환장과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5 일 이내에, 귀하의 답변서와 CIS 를 각 당사자들, 또는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에게 보내야 함.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배달증명 영수증을 요구하며, 송달됐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송된 녹색카드를 보관해야 함.

FORM A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Law Division**

Your Name (first, middle, last)

_____ County
Docket Number: _____

Street Address

Town, State, Zip Code

Telephone Number

Plaintiff
v.

Defendant

CIVIL ACTION
Answer

The defendant, _____, answers the plaintiff's claim as follows:
(your name)

(St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paragraph of the plaintiff's complaint. If additional room is needed, attach a separate sheet.)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WHEREFORE, the defendant demands judgment dismissing the complaint with costs.

AFFIRMATIVE DEFENSE(S)

(State the reasons why you disagree with plaintiff’s complaint or why what you did or did not do is not a matter for court. If additional room is needed, attached a separate sheet.)

- 1. _____

- 2. _____

- 3. _____

CERTIFICATION OF NO OTHER ACTIONS

I certify that this dispute is not the subject of any other action pending in any other court or a pending arbitration proceeding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lso,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no other action or arbitration proceeding is contemplated. Further, other than the parties set forth in this complaint, I know of no other parties that should be made a part of this lawsuit. In addition, I recognize my continuing obligation to file and serve on all parties and the court an amended certification if there is a change in the facts stated in this original certification.

Dated: _____ Signature: _____

CERTIFICATION REGARDING FILING AND SERVICE

The undersigned hereby certifies that a copy of this pleading was served and filed within the time permitted by the court rules.

Dated: _____ Signature: _____

OPTIONAL: If you would like to have a judge decide your case, do not include the following paragraph in your complaint. If you would prefer to have a jury to decide your case, please sign your name after the following paragraph.

DEMAND FOR TRIAL BY JURY

TAKE NOTICE that the defendant demands a trial by jury on all issues.

Dated: _____ Signature: _____